

#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4년 8월 25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4년 8월 25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1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5차 행정복지위원회(2004년 9월 7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총무과장 이해양)

### □ 제안이유

- 세무·주차단속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장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시·구청간 적정한 역할분담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구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 업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각각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사무의 구 위임근거 등을 변경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도로과 옥외광고물관리업무가 주민자치과로 이관됨에 따라 구 위임사무 소관부서를 주민자치과로 변경함.(안 별표제1호)
- 주민자치과 민방위업무가 시민봉사과로 이관됨에 따라 구 위임사무 소관부서를 시민봉사과로 변경함.(안 별표제1호)
- 시본청 부과, 징수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세정과에 시세부과·징수에 관한 구 위임사무를 신설함.(안 별표제1호 및 제2호)

-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각각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무의 구 위임근거등을 변경함.(안 별표제1호)
- 불법주정차단속 및 과태료관련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교통지도사업소가 차량관리사업소로 기능전환 및 명칭변경됨에 따라 교통행정과에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관련 구 위임사무를 신설함.(안 별표제1호)
- 청소사업소에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관련사무 및 과태료부과징수 등 구 위임사무를 신설함.(안 별표제1호)

###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행정기구개편과 관련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지요?	○ 네, 그렇습니다.

### 4. 토론요지

#### 가. 찬성토론

- 없음

#### 나. 반대토론

- 없음

###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285호
의결 년월일	2004. 9. 9 (제114회)

제출년월일 : 2004. 8. 25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 제안이유

- 세무·주차단속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현장업무를 구청으로 이관하여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시·구청간 적정한 역할분담을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구 위임근거를 명확히 하고 업무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각각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사무의 구 위임근거등을 변경하려는 것임.

### □ 주요골자

- 가. 도로과 옥외광고물관리업무가 주민자치과로 이관됨에 따라 구 위임사무 소관부서를 주민자치과로 변경함.(안 별표제1호)
- 나. 주민자치과 민방위업무가 시민봉사과로 이관됨에 따라 구 위임사무 소관부서를 시민봉사과로 변경함.(안 별표제1호)
- 다. 시분청 부과, 징수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됨에 따라 세정과에 시세부과·징수에 관한 구 위임사무를 신설함.(안 별표제1호 및 제2호)

- 라.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이 각각 폐지되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사무의 구 위임근거등을 변경함.(안 별표제1호)
  
- 마. 불법주정차단속 및 과태료관련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고 교통지도사업소가 차량관리사업소로 기능전환 및 명칭변경됨에 따라 교통행정과에 불법주정차단속, 과태료관련 구 위임사무를 신설함.(안 별표제1호)
  
- 바. 청소사업소에 축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관련사무 및 과태료부과징수등 구 위임사무를 신설함.(안 별표제1호)

###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사무위임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중 주민자치과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실과 소별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적 용	수임기관
주 민 자치과	1.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가.옥외광고물중 가로형간판, 세로형간판, 돌출간판, 지주 이용간판, 공영간판,에드별론 등의 표시허가에 관한사항 나.옥외광고물등의 표시·신고 수리에 관한 사항(단, 2개구 이상에 표시하는 광고물 제외) 다.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장 등에 관한 사항 라.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의 취소 마.허가, 신고 안전도 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바.과태료의 부과징수 사.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아.가림간판 규격의 결정 자.영업정지 등에 관한 사항	· 옥외광고물등 관리법제3조, 동법시행령 제 4조 내지 제7조 · 동법제3조  · 동법제3조 동법시행령제9조 · 동법제13조  · 동법제17조  · 동법제20조 · 동법제10조 ·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0조 · 동법제14조	구청장

별표 제1호의 주민자치과란 다음에 시민봉사과란 및 세정과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과 소별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적 용	수입기관
시 민 봉사과	1. 민방위 기술 지원대	가.민방위 기술지원대 편성	·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17조 의3	구청장
	2. 민방위대 정기검열	가.민방위대 정기검열(미 위임 직장대및 지역대. 단, 민방위 대원 150인이상 직장대는 제외)	· 동법시행령 제22조의2	
	3. 민방위 교육 훈련	가.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동법 제34조 제2항	

실과 소별	위 임 사 무 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적 용	수입기관
세정과	1. 시세 부과 징수사무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납세의 고지  나.부과취소 및 변경  다.납기전 징수  라.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마.가산금 및 독촉  바.채납처분 사.결손처분  아.교부청구 자.관허사업의 제한  차.징수유예등(고지유예·분 할고지·징수유예 및 채납 처분등 유예) 카.과오납금의 처리 (환부이자계산)	· 지방세법제25조 · 동법시행령제8조 · 동법제25조의2 · 동법시행규칙 제7조 · 동법제26조,동법 시행령제10조 · 동법제26조의2 · 동법시행령 제11조 · 동법제27조 · 동법시행령 제12조 ·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1조 · 동법제28조 · 동법제30조의3 · 동법시행령 제14조 · 동법제34조 · 동법제40조,동법 시행령제28조, 동법시행규칙 제15조 · 동법제41조 내지 제 44조 · 동법제45조 내지 제47조	구청장

	타.소멸시효  파.서류의 송달  하.공시송달 거.징수촉탁 너.공탁 더.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  러.납세완납증명서등 발급 머.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	• 동법 제30조의5, 제30조의6,동법 시행령 제14조의3  • 동법 제51조,제51 조의2  • 동법 제52조  • 동법 제56조  • 동법 제62조  • 동법 제64조,동법 시행령 제49조  • 동법 제39조  • 민원사무처리에 관한법률 제9조	
--	--	--	--

별표중 제1호 도시과의 1호란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 도시과 3호  
 • 5호 및 6호의 근거법적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도시계획 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가. 주거, 상업, 공업지역내의 개발행위허가(녹지지역제외)  나. 불법개발행위 등의 단속  다. 도시계획구역의 무허가행위 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56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56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 법률 제60조제3항	구청장
--------------------------	--	---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제2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118조제4항  
 • 동법 제122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33조



별표 제1호 도로과중 13호란을 삭제한다.

별표 제1호의 도로과란 다음에 교통행정과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과 소별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적 용	수임기관
교 통 행정과	1. 불법주정차의 단속에 대한 다음의 권한	가.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 나. 이의신청 접수처리  다. 과태료 부과 및 징수 라. 미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	· 도로교통법 제28조 제29조,제30조 · 동법 제115조의2  · 동법 제115조의2  · 동법 제115조의2	구청장

별표 제1호중 녹지공원과란을 삭제한다.

별표 제1호 청소사업소 2호중 라목란·마목란 및 사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호에 아목란 내지 차목란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적 용
라.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 준공검사	· 동법제24조의2, 제26조, · 동법시행령제11조,제12조,제13조, 제14조 · 동법시행규칙제46조,제47조,제48조, 제49조,제56조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적 용	수입기관
<p>마. 축산폐수배출시설 및 축산 폐수처리시설의 관리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법제28조</li> <li>· 동법시행령 제17조, 제17조의 2</li> <li>· 동법시행규칙 제58조, 제59조, 제62조</li> </ul>	
<p>사.과태료 부과·징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법 제58조,</li> <li>· 동법시행령 제35조,</li> <li>· 동법시행규칙 제112조</li> </ul>	
<p>아.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법제25조</li> <li>· 동법시행령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li> <li>· 동법시행규칙 제52조,제53조</li> </ul>	
<p>자.배출부과금 부과·징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법제29조</li> <li>· 동법시행령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li> <li>· 동법시행규칙 제63조,제64조</li> </ul>	
<p>차.등록취소 또는 영업 정지된 오수처리시설 등 설계·시공 업자의 계속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법제41조</li> <li>· 동법시행규칙제95조</li> </ul>	

별표 제1호의 청소사업소란 다음에 녹지공원관리사업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실과 소별	위임사무명	단 위 사 무 명	근 거 법 적 용	수임기관
녹 지 공 원 관 리 사업소	1.도시공원 관리	가.도시공원의 관리(단, 구 관할 구역내 어린이공원 및 미시설 공원) 나.녹지의 관리 (단, 구 관할구역내 녹지지역) 다.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 (단, 구관리어린이공원 및 녹지)	· 도시공원법 제5조  · 동법제11조 제1항  · 동법제8조 및 제12조의2	구청장
	2.산림자원 보호	가.임목벌채 및 임산물 굴채취 허가(신고) 나.입산통제구역의 지정, 해제  다.입산신고 라.산불예방등을 위한 금지행위 단속 마.산지정화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바.부정임산물 몰수 사.산불진화 사상자에 대한 보상  아.산불예방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산림법 제90조  · 동법제97조, 제99조  · 동법제98조  · 동법제100조의 2  · 동법제100조의 3  · 동법제93조  · 동법제102조의 3  · 동법제125조	
	3. 먹는물 공동시설 관리	가. 약수터 유지관리 및 보수	· 먹는물관리법 제7조	

별표 제2호 세정과란에 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표 제2호중 징수과란을 삭제한다.

2. 지방세 관련 제증명 발급	가. 지방세관련 제증명서의 발급	· 지방세법제 38조, 동법시행령 제19조, 제20조	
---------------------	----------------------	-------------------------------------	--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 1. 부천시 사무의 구위임사항

현				개 정 안					
실과 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임 기관	실과 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임 기관	
주 민 자치과	1.민방위 기술 지원대 2.민방위대 장기 검열	가.민방위 기술지원대 편성 가.민방위대 정기검열 (미 위임직장대 및 지역대. 단, 민방위 대원 150인 이상 직장 대는 제외)	·민방위기본법 시행령제17조의3 ·동법시행령 제22조의2	구청장	주 민 자치과	1.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가.옥외광고물중 가로현간판, 세로 형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공영 간판, 에드벌룬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나.옥외광고물등의표시신고수리에 관한사항(단 2개구 이상에 표시하 는 광고물 제외) 다.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연 장 등에 관한사항 라.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의 취소 마.허가신고 안전도 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바.과태료의 부과징수 사.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아.가림간판 규격의 결정 자.영업정지 등에 관한사항	· 옥외광고물등관리 법제3조, 동법시행 령제4조내지제7조  · 동법제3조  · 동법제3조동법 시행령제9조 · 동법제13조 · 동법제17조  · 동법제20조 · 동법제10조 · 동법시행령제 19조, 제20조  · 동법제14조	구청장
	3.민방위교육 훈련	가.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한사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동법제34조 제2항						

현행				개정안					
실과 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적용	수임 기관	실과 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임 기관
〈신 설〉					시 민 봉사과	1.민방위 기술 지원대 2.민방위대 정기 검열 3.민방위교육 훈련	가.민방위 기술지원대 편성  가.민방위대 정기검열 (미 위임직장대 및 지역대. 단, 민방위대원 150인 이상 직장대는 제외)  가.민방위 교육훈련에 관한사항 위 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7조의3 ·동법시행령제22조의2  ·동법제34조제2항	구청장
〈신 설〉					세정과	1. 시세 부과징수 사무에 관한 다 음의 권한	가.납세의 고지  나. 부과취소 및 변경  다. 납기전 징수  라. 천재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마. 가산금 및 독촉	·지방세법제25조 · 동법시행령제8조 · 동법제25조의2 · 동법시행규칙제7조 · 동법제26조 · 동법시행령제10조 · 동법제26조의2 · 동법시행령제11조  · 동법제27조 · 동법시행령제12조 · 동법시행규칙제10조 제11조	구청장

현		행			개 정 안				
실과 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적용	수입 기관	실과 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입 기관
							<u>바. 체납처분</u> <u>사. 결손처분</u>  <u>아. 교부청구</u> <u>자. 관허사업의 제한</u>  <u>차. 징수유예등(고지유예·분할 고지·징수유예 및 체납처분 등 유예)</u> <u>카. 과오납금의 처리(환부이자계산)</u> <u>타. 소멸시효</u>  <u>파. 서류의 송달</u> <u>하. 공시송달</u> <u>거. 징수촉탁</u> <u>너. 공탁</u> <u>더. 세무공무원의 질문·검사</u> <u>러. 납세완납증명서등 발급</u> <u>머. 세목별과세증명서 발급</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동법제28조</li> <li>· 동법제30조의3</li> <li>· 동법시행령제14조</li> <li>· 동법제34조</li> <li>· 동법제40조,</li> <li>· 동법시행령제28조</li> <li>· 동법시행규칙제15조</li> <li>· 동법제41조내지 제44조</li> <li>· 동법제45조내지제47조</li> <li>· 동법제30조의5, 제30조의6,</li> <li>· 동법시행령제14조의3</li> <li>· 동법제51조, 제51조의2</li> <li>· 동법제52조</li> <li>· 동법제56조</li> <li>· 동법제62조</li> <li>· 동법제64조, 시행령제49조</li> <li>· 동법 제39조</li> <li>·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제9조</li> </ul>	구청장

현행					개정안				
실과 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입 기관	실과 소별	위 임 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적용	수입 기관
도시과	1.도시계획구역 안에서의 행위 허가	가.주거,상업,공업지역 내의 토지형질변경 허가(10,000㎡미만, 녹지지역 제외) 나.토지형질변경등의 단속 다.도시계획구역의 무허가행위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	• 도시계획법 제46조  • 도시계획법 제46조 • 도시계획법 제47조제6항	구청장	도시과	1.도시계 획구역 안에서 의 행위 허가	가.주거,상업,공업 지역내의 개발행 위허가(녹지지역 제외) 나.불법개발행위등 의 단속 다.도시계획구역의 무허가행위에 대한 원상복구명령	•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56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56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60조 제3항	구청장
	2.(생략)					2.(현행과 같음)			
	3.토지거래 규제	가. 토지거래계약허가 용도별면적이하의신고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제2항			3.----- -----	-----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제118조제2항	
	4.(생략)					4.(현행과 같음)			
	5.토지거래계약 허가에 관한 다음의 권한	가. 토지거래계약허가 신청에대한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 나. 토지거래계약의 허가신청에 대한 선 매자의 지정 및 통지	•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3제5항 • 동법제21조의14			5.----- ----- -----	----- -----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제118조제4항 • 동법제122조	
	6.토지이용계획 에 관한 확인 또는 열람	가. 토지이용계획확인 서 발급 나. 토지이용계획열람	• 국토이용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의14			6.----- ----- ---	----- -----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시행규칙 제33조	



현행					개정안				
실과 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임 기관	실과 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임 기관
도로과	13.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사항	<p>가.옥외광고물중 가로현간판, 세로형 현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에드벌룬등의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p> <p>나.옥외광고물등의표시·신고수리에 관한사항(단, 2개구 이상에 표시하 는 광고물 제외)</p> <p>다. 허가 및 신고사항의 변경과 기간 연장 등에 관한사항</p> <p>라.옥외광고물등의표시허가의 취소</p> <p>마.허가·신고안전도 검사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p> <p>바.과태료의 부과징수</p> <p>사.위반사항에 대한 조치</p> <p>아.가림간판 규격의 결정</p> <p>자.영업정지 등에 관한사항</p>	<p>· 옥외광고물등관리법 제3조,동법시행령 제4조내지제7조</p> <p>· 동법제3조</p> <p>· 동법제3조동법 시행령제9조</p> <p>· 동법제13조</p> <p>· 동법제17조</p> <p>· 동법제20조</p> <p>· 동법제10조</p> <p>· 동법시행령제19조, 제20조</p> <p>· 동법제14조</p>	구청장		<삭 제>			

현행					현행				
실과 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입 기준	실과 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입 기준
신 설					교 통 행정과	1.불법주정 차의 단속 에 대한 다음의권한	가.불법주· 정차지도 단속 나.이의신청 접수처리 다.과태료부과 및징수 라.미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	· 도로교통법 제28조,제 29조,제30조 · 동법제115 조의2 · 동법제115 조의2 · 동법제115 조의2	구청장
녹 지 공원과	1. 도시공원 관리  2. 산림자원 보호	가. 도시공원의 관리(단, 구 관할 구역내 어린이공원 및 미시설공원) 나. 녹지의관리 (단, 구 관할구역내 녹지지역) 다.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 (단, 구관리어린이공원 및 녹지 가. 임목벌채 및 임산물 굴채취허 가(신고) 나.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해제 다. 입산신고 라. 산불예방등을 위한 금지행위단속 마. 산지정화보호구역의 지정,해제 바. 부정임산물 몰수 사. 산불진화 사상자에 대한 보상 아. 산불예방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도시공원법제5조  · 동법제11조제1항  · 동법제8조 및 12조의2  · 산림법제90조  · 동법제97조,제99조 · 동 법 제 98조 · 동법제100조의 2 · 동법제100조의3 · 동법제93조 · 동법제102조의3  · 동법제125조	구청장	<삭 제>				

현		행			현		행		
실과 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임 기관	실과 소별	위 임 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임 기관
	3.먹는물공동 시설관리	가. 약수터 유지관리 및 보수	· 먹는물관리법 제7조						
청 소 사업소	1.(생략)			구청장	청 소 사업소	1.(현행 과같음)			-----
	2.오수·분뇨 및 축산· 폐수에 관한 사항	가. ~ 다.(생 략) 라.축산폐수배출시설 등의 설치신고,준공 검사  마.축산폐수처리시설 의 관리  바.(생 략) 사.오수정화시설 부적 합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동법제24조의 2제4항,제26조  · 동법제28조  · 동법제58조, 동법시행규칙  제112조			2.----- ----- ----- -----	가.~다.(현행과 같음) 라.축산폐수배출시설에 대한 설치허가,준공 검사  마.축산폐수배출시설및 축산폐수처리시설의 관리등  바.(현행과 같음) 사.과태료 부과·징수	· 동법제24조의2,제26조 동법시행령제11조,제12 조,제13조,제14조 · 동법시행규칙제46조, 제47조,제48조,제49조, 제56조 · 동법제28조, · 동법시행령제17조, 제17조의2 · 동법시행규칙제58조, 제59조,제62조  · 동법제58조, · 동법시행령제35조,  · 동법시행규칙제112조	

현		행			현		행		
실과 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임 기관	실과 소별	위 임 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임 기관
		<신 설>					아.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치등	· 동법제25조 · 동법시행령제15조,제 16조,제16조의2 · 동법시행규칙제52조, 제53조	
		<신 설>					자.배출부과금 부과· 징수	· 동법제29조 · 동법시행령제18조,제 19조,제20조,제21조,제 22조,제23조,제24조, 제25조 · 동법시행규칙제63조, 제64조	
		<신 설>					차.등록취소 또는 영업 정지된 오수처리시 설등 설계·시공업 자의 계속공사	· 동법제41조 · 동법시행규칙제95조	

현		행			개 정 안				
실과 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적용	수임 기관	실과 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임 기관
〈신 설〉					녹 지 공 원 관 리 사업소	1. 도시공원관리	가. 도시공원의 관리(단, 구 관할 구역내 어린이공원 및 미시설공원)	· 도시공원법제5조	구청장
							나. 녹지의관리 (단, 구 관할구역내 녹지지역)	· 동법제11조제1항	
						2. 산림자원보호	다. 도시공원 및 녹지점용허가 (단, 구관리어린이공원 및 녹지)	· 동법제8조 및 제12 조의2	
							가. 임목벌채 및 임산물 굴채취허 가(신고)	· 산림법제90조	
							나. 입산통제구역의 지정, 해제	· 동법제97조, 제99조	
							다. 입산신고	· 동법제98조	
							라. 산불예방등을 위한 금지행위 단속	· 동법제100조의 2	
							마. 산지정화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 동법제100조의3	
							바. 부정임산물 몰수	· 동법제93조	
							사. 산불진화 사상자에 대한 보상	· 동법제102조의3	
							아. 산불예방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 동법제125조	
						3. 먹는물공동 시설관리	가. 약수터 유지관리 및 보수	· 먹는물관리법제7조	

## 2. 동 위임사항

현					개 정 안				
실과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입기관	실과소별	위임사무명	단위사무명	근거법 적용	수입기관
세정과	1. (생략) <u>&lt;신설&gt;</u>				----	1. (현행과같음) 2.지방세 관련 <u>제증명 발급</u>	가.지방세 관련 <u>제증명서 의 발급</u>	· 지방세법제38조, <u>동법시행령제19조, 제20조</u>	
<u>징수과</u>	2.지방세 관련 <u>제증명 발급</u>		· 지방세법제38조, <u>동법시행령제19조, 제20조</u>	<u>동 장</u>	<u>&lt;삭 제&gt;</u>				